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3-25

대 전 지 방 법 원

제 4 -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23나213134 손해배상(지)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
	담당변호사 장지원
피고, 피항소인	B
제 1 심 판 결	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. 5. 16. 선고 2022가소4659 판결
변 론 종 결	2024. 12. 17.
판 결 선 고	2025. 3. 18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5. 6.부터 2025. 3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 중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3-25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<고쳐 쓰는 부분>

○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4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다만,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(저작권법 제126조). 원고가 피고의 원고 사진에 대한 저작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3-25

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,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2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는 원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나, 그 사용료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, ② 피고가 원고 사진을 제품의 소개·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, 피고가 원고 사진을 게시한 기간 동안 피고 상품을 판매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총 매출액이 320,000원인 점, ③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(갑 제4호증의 1 내지 3)를 근거로 원고 사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 4,840,000원이라고 주장하나, 그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 상품의 상세페이지 및 쇼핑몰 전체의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바, 이를 근거로 손해액이 4,840,000원에 달한다고 볼 수 없는 점, ④ 그 밖에 원고 사진의 사용 목적과 제작 경위, 피고의 원고 사진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,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300,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.

한편,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적정한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, 같은 조 제3항은 "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(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는바, 원고 사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3-25

등록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바,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.

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(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),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 앞서 인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형태, 원고와 피고의 관계,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입은 피해의 정도,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,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액을 300,000원으로 정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손해액의 합계 600,000원(= 300,000원 + 300,000원)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100,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2. 5. 6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. 5. 16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당심 인용금액인 500,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. 5. 6.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. 3. 1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3-25

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현정

판사 강애란

판사 임수정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

재판장
판 사 유현정